

○ 이견 없음

5. 참고사항

-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상세 계획구역
-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의견 없음.
- 용도지역 변경결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議長 文一權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의 회기로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96회계연도 결산승인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일에 걸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성과가 뒷받침이 되어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될 정기회가 오는 11월 20일에 동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25分 散會)

○出席議員 135人

| | | |
|-----|-----|-----|
| 金種求 | 文錫珍 | 申垆植 |
| 金廣洵 | 金明坤 | 李智文 |
| 柳鍾秘 | 鄭水華 | 金在京 |
| 金玉源 | 梁會善 | 呂鼎九 |
| 黃炳五 | 金勝子 | 慶奎福 |
| 李亮漢 | 金平洛 | 黃好淳 |
| 金明炫 | 金成洙 | 黃仁明 |
| 李廷義 | 鄭海純 | 崔光雄 |
| 趙相勳 | 朴一男 | 朴時河 |
| 文八卦 | 禹元植 | 田炳萬 |
| 鄭善順 | 鄭鎮宇 | 鄭泰宗 |
| 李斗鶴 | 金永姬 | 金聖浩 |
| 文龍子 | 朴正龜 | 安順德 |
| 盧永爽 | 崔永運 | 黃正植 |
| 金鍾來 | 李금라 | 崔俊和 |
| 崔鍾午 | 劉俊相 | 金勝建 |
| 宋仁回 | 高光哲 | 金相男 |

| | | |
|-----|-----|-----|
| 洪承采 | 朴德基 | 朴贊秀 |
| 金寧剛 | 朴贊國 | 徐在浣 |
| 梁東錡 | 鄭炳權 | 高紀孝 |
| 鄭淵甫 | 洪月杓 | 洪淳喆 |
| 安秉昭 | 尹鍾一 | 宋德華 |
| 李達源 | 李英順 | 林鍾化 |
| 李子源 | 尹福永 | 白南善 |
| 李鍊植 | 閔庚樺 | 朴南植 |
| 林靜枝 | 趙旬衡 | 金成春 |
| 成聖鏞 | 金洛淳 | 具哲會 |
| 車星煥 | 鄭鎮澤 | 鄭在天 |
| 金亨吉 | 許光泰 | 劉大運 |
| 金在仁 | 池昌洙 | 金天柱 |
| 鄭址弘 | 崔鍾根 | 白懿宗 |
| 李始英 | 李允中 | 梁敬淑 |
| 白聖德 | 金喜甲 | 池龍鎬 |
| 朴相根 | 李康玉 | 朴洙桓 |
| 金周喆 | 金芳林 | 盧載東 |
| 洪樂元 | 魚潤慶 | 李成浩 |
| 李基連 | 高溶振 | 金泚柱 |
| 柳德烈 | 李康珍 | 洪性龍 |
| 趙上男 | 朴康謙 | 張永春 |
| 鄭炳仁 | 孫洙馥 | 張精一 |
| 劉起鍾 | 李聲九 | 李昌根 |
| 李載震 | 吳世根 | 金洙福 |
| 金錫浩 | 金箕英 | 文一權 |
| 李善宰 | 崔炳莘 | 鄭福辰 |
| 李容富 | 崔鍾德 | 張壽完 |

書面答辯書

○金勝建議員

(質疑要旨)

1. 강남구 도곡동 102층 빌딩 건축허가 사전 승인 관련

- '96.9.4.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동 부지에 대하여 초고층화가 무리없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실여부 및 사전승인 반려사유는 무엇이며, 건축위원회의 결정이 서울시 정책결정에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지?

- '97.9.12. 시에 제출된 강남구청장의 의견서가 해당회사의 홍보물 같은바, 다른구청장의 의견도 이와 유사한지 및 동건과 관련하여 강남구청장의 견해에 대한 시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 3차 신청에 앞서 건폐율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사전승인의 조건이 건폐율에 달려 있는지 및 시에서 생각하는 최적의 건폐율은?
- 지상박스 방식으로 건설된 기존의 도로가 있는지 여부와 이 건설방식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바람.

(答 辯)

□ 건축심의 사항 및 사전승인 반려사유 등에 대하여

- 건축물의 건축계획적인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는 원론적으로 건축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도 초고층건축물을 계획하고 건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서울시의 경우 초고층건축을 도심지에 건축한다면 도시와 역사성이나 경관 등 제반문제로 곤란할 것이나 도시와곽의 양재천 같은 수변공간에 접하여 건축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심의의결한 사항이며,
- 사전승인 신청을 재검토토록 통보한 사유는 등 건축물은 우리 나라 최고의 초고층 계획으로서 넓은 지역에 미치는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제반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광역적 영향,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와 주변 공공시설의 정비방향 등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계 초고층 건축물과 비교할 때 건폐율이 너무 크므로 건폐율을 줄여서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대폭 추가확보가 필요하였으며,
-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의결된 양재천변 도로확장안의 대안으로 지상박스구조물 설치안은 최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제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신청지 주변 우성아파트 등과 숙명여중교에서 초고층 건축물신축으로 인한 교통혼잡,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녹지훼손 등을 사유로 한 민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하여 재검토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 건축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말씀드리면

-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6층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문가의 자문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심의된 내용들을 건축허가시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청장의 의견서에 대하여

- 관할구청의 구청장 의견서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사전승인을 위한 검토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건폐율 축소토록 한 사항 등에 대하여

- 건폐율 축소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대폭 추가확보하여 문화광장이나 조각공원 또는 공공조경 등을 설치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최적의 건폐율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건축목적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는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지상BOX 방식으로 계획된 사유 등에 대하여

-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시 양재천변 도로확장(2차선→4차선)토록 하였고, 본 계획은 강남구청에서 양재천변 도로확장과 관련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인접부분에 지상 BOX도로를 계획한 것으로써 지역 및 주변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상BOX 도로설치시는 환기, 조명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교차로에서의 교통처리 등에 대한 제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質疑要旨)

지난 1995년 10,195평을 삼성에 매각할 당시 금액은 얼마이며, 매각시 초고층 건축과 관련된 이면계약 여부

(答 辯)

- '94.11.4. 공개경쟁입찰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의 토지는 삼성전자(주)에 낙찰되었으며,
-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삼성전자(주)와 나산종합건설(주), 우성건설(주), 도곡제1지역주택조합 등 총 4개 업체에서 응찰하였음.
- 토지 매각공고시 매각예정가격을 총 1,917억원으로 공고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총 2,820억원(예정가격의 147%)에 낙찰되었으며,
- 동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상 상업용지로 매각하였으며, 매각시 초고층 건축과 관련된 이면계약은 없었습니다.

(質疑要旨)

-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건립관련
 - 축구전용경기장으로 건설하였을 때 예상되는 연간 사용일수와 적자규모는?
 - 소요경비 4,800억원에 대한 재원출연 방안은?
 - 전체 소요재원중 중앙정부 30%, 서울시 30%, 다른 단체나 조직 40%로 알고 있는데 이 중 40%의 재원출연 대상과 예상 할당액은?
 -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얼마이며, 월드컵조직위의 TV중계료가 12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월드컵조직위의 분담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또한 중앙정부 보조금 30% 이외의 다른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 경우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개최 도시권을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答 辯)

- 김승건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은 잠실경기장이나 독성 돔구장이 개최식을 치르는데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회의 판정이 있어서 개최식과 준결승전을 치를 제3의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건설하기로 한 것

입니다.

- 지난 10월 10일에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상암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간에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 추정한 예상건립비용은 주경기장 건설비와 주변 기간시설 건설비를 합하여 약 4,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기장건설 : 2,700억 주변정비 : 1,800억
- 현재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건설비중 3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어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중에 있으며,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내용)

- 서울시가 상암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월드컵주경기장은 다목적으로 활용키 위한 경기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월드컵조직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운영수지면을 보면 축구경기는 아직 경기수와 관중수가 부족하고 동절기에는 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활성화될 국제축구대회 유치, 서울을 본거지로 창설될 프로축구구단 유치, 그리고 럭비, 육상, 음악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용일수는 현재로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프로축구 2개구단이 유치되면 50일 정도(휴 25일)가 사용되고 기타 국제체육대회, 아마추어대회 등에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에는 주경기장 건설비에 2,641억원, 주변기간시설 건설비에 1,895억원 등 총 4,5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 |
|--|---|
| <p>현재 건설비중 국고지원 30%를 제외하 나머지 부분은 총리실, 재경원, 문체부, 월 드컵조직위, 대한축구협회 등으로 구성된 총리실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논의 결정 키로 하였으며, 지난 10.2. 제1차 회의를 가졌고, 제2차 회의는 11.12.로 예정되어 있으며, 관계기관간의 부담액은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p> <p>□ 월드컵 TV중계료의 경우 월드컵조직위 의 견에 따르면 우리 나라와 FIFA의 협약에 의해 순수익의 25%가 우리 나라에 귀속 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추정된 TV중계료 총액은 약 10억스위스프랑(한화 3,330억)으 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몫은 비 용을 제외한 순수익 6억스위스프랑의 25% 인 1억 5,000만스위스프랑(한화 500억)정도 로 예측하고 있습니다.</p> <p>□ 마지막으로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 리면, 현재 총리실주관으로 재원대책 소위 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 과가 우리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 우,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여부를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코자 합니다.</p> <p>(質疑要旨)</p> <p>○ 학여울역 주변 체비지 무상사용 관련 -동 토지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7. 12.31.까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 고, 앞으로도 1999년까지 계속 사용하여 야 한다고 하는데 8,290㎡(2,508평)를 전 라남도예 농수산물직판장 용도로 무상사용 하도록 허가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p> <p>(答 辯)</p> <p>○ 질문하신 체비지는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와 514-3호의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위치한 총 11,824평의 개포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체비지입니다.</p> <p>○ 이 체비지에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용요 청한 6,846평을 지하철 자재적치장으로 활 용하고 있고, 잔여토지중 전라남도에 2,508 평을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사용승인하였으며, 현재 지하철역사 용지를 포함 2,470평이</p> | <p>남아 있습니다.</p> <p>○ 지하철자재적치장으로 필요한 토지를 제외 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96.8.14. 전라남도 로부터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산 지 직송 농·수·축산물을 도시민에게 저렴 하게 공급하기 위해 농수산물직판장 개설 을 위한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88조제2항 규정에 따라 '98.8. 31.까지 무상사용토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p> <p>○ 당초 전라남도는 여론조사를 실시(69.4% 찬성)하여 추진했던 사항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교통문제 등으로 민원이 야 기됨에 따라 현재 직판장 개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p> <p>○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청으로부터 현지 주 민과의 민원이 있으므로 체비지 사용승인 철회요청이 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지난 11.4. 사용승인 기간 연기요청이 접수되었 으나,</p> <p>○ 우리 시에서는 당초 사용승인시 제시한 사용조건의 위배여부 검토와 전라남도의 향후 민원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p> <p>(質疑要旨)</p> <p>아파트 불법구조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 향은?</p> <p>(答 辯)</p> <p>□ 우리 시는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 건교부지침에 의거 '96.11~12월말까지 각 구별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87,854건 이 신고 접수되었으며, 이 중 허용되는 행위는 51,857건(59.4%)이고 금지되는 행 위는 35,497건(40.6%)입니다.</p> <p>○ 허용되는 행위 : 51,857건 -비내력벽·철거 : 31,235건 -기 타 : 20,622건</p> <p>○ 금지되는 행위 : 35,497건 -주요구조부 훼손행위 : 9건 -비내력벽(신축·이동) : 707건(1,482건 감) -중량계 사용한 발코니 높임 : 30,351건 -기 타(이중샷시) : 4,430건(1,482건 중)</p> <p>□ 금지되는 행위(35,497건)에 대한 원상복구 는 '97.10월말 현재 1,317건이 완료되었으 며 미추진된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단계별 원상복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진하</p> |
|--|---|

| | |
|---|---|
| <p>고 있습니다. (구별실적 별첨)</p> <p>○ 1단계 원상복구 : 9건</p> <p>- 대상 :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훼손행위</p> <p>- 실적 : 6건(미완료 3건)</p> <p>-추진기간 : '97.4월말까지</p> <p>-조치 : 미완료 3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조치.</p> <p>○ 2단계 원상복구 : 707건</p> <p>- 대상 : 비내력벽의 신축 또는 위치이동행위</p> <p>- 실적 : 422건(59.6%)</p> <p>-추진기간 : '97.9월말까지</p> <p>-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불이행가구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예고문 통보 (10월중순) • 2차 : '97.11.15.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3차 : 이행강제금 부과하여도 계속 불응시는 최후수단으로 고발조치 | <p>※ 당초 비내력벽(신축, 이동) 2,189건중 1,482건이 기타(이중샷시)란으로 이동 (용산, 강남)</p> <p>○ 3단계 원상복구 : 34,781건</p> <p>- 대상 : 중량재 사용한 배란다 바닥높임 및 기타(이중샷시)</p> <p>- 실적 : 889건(2.5%)</p> <p>-추진기간 : '97.12월말까지</p> <p>-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내 원상복구토록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 입주인이 원하는 경우 아파트단지별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구조안전전문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오면 구청장이 허용 • 구조상 안전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 <p>※ 당초 발코니 및 기타(이중샷시)는 33,299건 있었으나 비내력벽(신축, 이동) 1,482건이 변경된 관계로 34,781건이 되었음.</p> |
|---|---|

<별첨>

구별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현황

'97.10월말 현재

| 구 별 | 총 계 | | 주요구조부 | | 비내력벽 (신축·이동) | | 발코니 및 기타 | | 비 고 |
|-----|--------|-------|-------|----|-----------------|-----|----------|-----|-------------|
| | 대상 | 조치 | 대상 | 조치 | 대상 | 조치 | 대상 | 조치 | |
| 계 | 35,497 | 1,317 | 9 | 6 | 707 | 422 | 34,781 | 889 | 증1,482 : 기타 |
| 종 로 | 51 | 2 | | | | | 51 | 2 | |
| 중 구 | 7 | 0 | | | | | 7 | | |
| 용 산 | 811 | 8 | 1 | 1 | 7 | 7 | 803 | | 증337 : 기타 |
| 성 동 | 319 | 23 | | | 31 | 23 | 288 | | |
| 광 진 | 1,289 | 1 | 1 | 1 | | | 1,288 | | |
| 동대문 | 32 | 0 | | | | | 32 | | |
| 중 량 | 351 | 24 | 3 | 1 | 3 | 3 | 345 | 20 | 2건 : 고발 |
| 성 북 | 138 | 5 | | | 5 | 5 | 133 | | |
| 강 북 | 0 | 0 | 0 | | 0 | | 0 | | |
| 도 봉 | 773 | 66 | 1 | | 20 | 2 | 752 | 64 | 1건 : 고발 |
| 노 원 | 590 | 0 | | | | | 590 | | |
| 은 평 | 251 | 11 | | | 6 | | 245 | 11 | |
| 서대문 | 644 | 72 | 1 | 1 | 55 | 41 | 588 | 30 | |
| 마 포 | 121 | 75 | 1 | 1 | 1 | 1 | 119 | 73 | |
| 양 천 | 3,749 | 18 | | | 60 | 18 | 3,689 | | |

| 구 별 | 총 계 | | 주요구조부 | | 비내력벽 (신축·이동) | | 발코니 및 기타 | | 비 고 |
|-----|-------|-----|-------|----|-----------------|-----|----------|-----|-------------|
| | 대상 | 조치 | 대상 | 조치 | 대상 | 조치 | 대상 | 조치 | |
| 강 서 | 1,112 | 0 | | | 50 | | 1,062 | | |
| 구 로 | 580 | 103 | | | | | 580 | 103 | |
| 금 천 | 202 | 86 | | | | | 202 | 86 | |
| 영등포 | 759 | 0 | | | 8 | | 751 | | |
| 동 작 | 1,930 | 501 | 1 | 1 | 9 | | 1,920 | 500 | |
| 관 악 | 215 | | | | 10 | | 205 | | |
| 서 초 | 3,693 | 163 | | | 176 | 163 | 3,517 | | |
| 강 남 | 5,469 | 0 | | | 84 | | 5,385 | | 중1,145 : 기타 |
| 송 파 | 9,578 | 159 | | | 170 | 159 | 9,408 | | |
| 강 동 | 2,833 | 0 | | | 12 | | 2,821 | | |

(質疑要旨)

5. 용산구 동부이촌동 302-140번지 앞의 좌회전허용 여부에 관하여

(答 辯)

- 도로상의 좌회전 허용, 횡단보도 설치,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주변 교통여건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경교통규제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쳐 설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산구 동부이촌동 302-140번지 앞의 좌회전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서울시경과 함께 주변교통여건(교통량, 차로폭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앙선 절개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좌회전 허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文錫珍議員

(質疑要旨)

1.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 시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지 계량, 비계량으로 구분하여 3~7% 정도의 적자가 반영된다고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기준이 잘못된 것임.
 - 공익성과 기업성을 고려한다 해도 경영성적이 최소한 50%는 되어야 할 것인데 잘못된 기준으로 점수를 잘 나오도록 배점하고 그것이 기준에 맞다는 것은 불합리한 설명이며, 시정개발연구원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答 辯)

-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경영수지 부문의 평가 비중이 최소한 50%는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경영수지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저희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이익의 대소로 모든 것이 평가되지만, 공기업은 경영의 흑자, 적자를 따지기 이전에 경영이 설립목적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다시 말하면 공공복지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 안전운행관리, 승객수송서비스향상 부문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 중요하며, 경영수지 부문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설정입니다.
- 시산하 각 투자기관의 자산 구성이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당한 폭의 차이가 있는 여건에서 경영수지부문의 평가비중을 대폭 높인다면 오히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평가지표의 설정과 평가과정에

| | |
|--|--|
| <p>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업무영역과 성격이 서로 다른 공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 신뢰성 및 객관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서 경영수지 부문만의 평가비중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에 불과하지만 전체 평가지표를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기업성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이 50% 이상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공기업 경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향후 경영수지부문의 평가비중을 점차 높여나가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 투자기관의 경영을 개선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質疑要旨)</p> <p>2. 환리스크 개념없는 부채관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의회평가손 계상 등 환리스크 관리개념을 세워야 하며, ○ AID차관은 서울시가 먼저 상환후 실수요소로부터 연차적으로 상환받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p>(答 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회계연도 채무결산시 외화부채의 원화평가액은 당해연도말 전신환매도율기준 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 외화부채 잔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포함된 원화금액으로 결산서에 계상되고 있으며, 적용 환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환차손(환리스크)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외화부채의 통화구성비 조정, 다른 통화로의 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우리 시의 경우에는 환차손(환리스크) 발생을 대비하여 도입당시에 외화부채의 약 45%를 미달러화로, 나머지 55%를 일본엔화로 도입함으로써 -특정 통화만을 갖는 경우보다 환율변동 | <p>에 비교적 안정적인 조치를 취해 놓고 있다고 생각되므로</p> <p>-통화구성조정이나 다른 통화로의 변경 등 별도의 환차손 관리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AID차관은 실제원리금 상환주체가 아파트 소유자이므로,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